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00

발의연월일: 2025. 4. 17.

발 의 자: 어기구·박희승·송옥주

이개호 · 오세희 · 허성무

안호영 • 주철현 • 임호선

박 정・소병훈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1999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여 수산업·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사람을 발굴하여 해 양수산 신지식인(이하 "신지식인"이라 함)으로 선정해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지식인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지식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지식인 육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지식·기술 혁신 기반을 조성하여 수산업·어촌 발전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수산 신지식인의 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분야의 지식·기술 개발을 통한 수산업·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 신지식인을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산 신지식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7조의2(수산 신지식인의 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분야의 지식・기술 개발을 통
	한 수산업・어촌의 변화와 혁
	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 신
	지식인을 육성하는 정책을 수
	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항에 따른 수산 신지식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